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AI·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산업 환경 변화로 디자인 경쟁력은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AI 기반 혁신 디자인 기술을 도입하여 상품 기획부터 브랜드, 마케팅까지 전주기 디자인을 통합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브랜드 고도화, 디지털 융합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상품 기획 분야에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2) 필요성 :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과 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과 구미 소재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업무 전반

- 1) 중소기업 디자인·상품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 2) 전주기 디자인, 브랜드·마케팅 디자인 등 분야별 지원사업 추진
- 3) 사업 공고,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평가 관리
- 4) 사업 수행 점검, 컨설팅 및 성과 관리
- 5) 사업비 집행 관리, 정산 및 결과보고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6. 3. ~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50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고
500	95	375	30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51226)

아.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자. 부서의견 : 디자인 관련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디자인·상품기획 분야에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관련 조례 2026.1.1. 시행)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AI 기반 디자인 기술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전반의 기획 및 운영 등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상품기획, 브랜드, 마케팅 등 전주기 디자인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재)대구 경북디자인진흥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부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